

수 신 분회장

(경유) 사무국장

제 목 2020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관련 특약신설 안내 요청

1.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20-07-0020 (2020.7.6.) 동제목
3. 우리협회는 2020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중앙회는 회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료배상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대해상에 요청하여 ‘형사방어비용(Ⅲ) 특약(의료행위 도중 환자와 신체접촉 등으로 인한 성범죄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방어비용을 담보해줄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하여 알려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특약명 : 형사방어비용(Ⅲ)보장 특약

○ 담보내용 :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폭력, 성희롱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의 고소제기로

구속 또는 기소가 되었지만,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험

증권에 정한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을 지급

○ 보상한도(보험료) : 5백만 원 (보험료 : 45,000원)

○ 담보개시일 : 가입 후 즉시

(※ ‘신규가입자’는 가입신청서에 특약선택 가입, ‘기 가입자’는 배서신청으로 특약추가 가능)

○ 문의처 : 중앙회(법무팀) : 02-2657-5033, 5038 / 보험사(현대해상 지정대리점) : 02-594-1870

□ 첨부 : 형사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Ⅲ)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부장 윤상환 국장 김태준 처장 김석모 협조

서한의 – 제 78 호 (2020.07.07.)

우)0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 (421호) / 홈페이지 : http://www.skma.or.kr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 (대)02-960-0811 / 팩스 02-6944-8075 / E-mail : skma@skma.or.kr /

**형사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Ⅲ)**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되고 성폭력, 성희롱 및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건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혹은 죄가 안됨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각하 결정에 한함)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증권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소속 또는 고용되어 아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사항

2. 의료사고 후 증거를 인멸한 때

**제4조(공제금액)**

회사는 형사방어비용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제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